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598
----------	-------

발의연월일 : 2025. 12. 24..

발 의 자 : 김소희 · 이양수 · 이종배
최수진 · 신동욱 · 박준태
김상훈 · 김미애 · 조경태
김형동 · 김기웅 · 김선교
서천호 · 김은혜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세나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하고 있음.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주식의 경우 비상장주식은 담보로 인정되지 않음. 이로 인해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은 중소·중견기업의 상속인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연부연납 방식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비상장주식은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없어, 사실상 상속세 납부를 위하여 비상장주식을 헐값에 조기 매각하도록 강요하는 결과로 이어짐.

비상장주식에 대해 과세대상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보아 상속세를 부과하면서 담보로서의 가치는 인정하지 않는 것은 조세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납세의무자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중소·중견기업의 대부분은 비상장 기업으로 기업승계 지원 차원에서도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통해 성실히 상속세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상장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을 연부연납을 위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1항).

법률 제 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 후단 중 “「국세징수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 대상이 된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국세징수법」”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1조(연부연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기입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제71조(연부연납) ① ----- ----- ----- ----- ----- -----. ----- -----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 대상이 된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국세기입법」</u> ----- ----- ----- ----- -----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